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91
------------	------

발의연월일 : 2016. 12. 29.

발 의 자 : 오영훈 · 노웅래 · 김민기

조승래 · 전재수 · 도종환

손혜원 · 유은혜 · 안민석

신동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각급학교 학칙에 학교 입학·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 및 학칙의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국의 특수학교 학칙 분석 결과 입학·전학 과정에서 비장애인 학생에게는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서약서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학칙의 제·개정에 관하여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아니하는 등 학칙의 내용이 다른 학교에 비하여 차별적이고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특수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부분에서도 다른 학교와 학칙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되므로 시정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입학·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해당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며, 학칙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보호자 및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차별로 인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5호·제6호, 제4조의2 및 제38조의2 제4호·제5호 신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교내외”를 “학생자치활동 등 교내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인 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서약서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차별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학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반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및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인 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서약서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한 자

5. 제4조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차별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차별의 금지) ① (생 략)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 략) 2. 수업참여 배제 및 <u>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u>  3. · 4. (생 략) <u>&lt;신 설&gt;</u>	제4조(차별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학생자치 활동 등 교내외</u> ----- -- 3. · 4. (현행과 같음) 5. <u>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인 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서약서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u> 6. <u>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차별</u> <u>제4조의2(학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반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u>
<u>&lt;신 설&gt;</u>	
<u>&lt;신 설&gt;</u>	

<p>제38조의2(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 (생 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수교육 대상자, 보호자 및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u></p> <p>제38조의2(별 칙)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인 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서약서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한 자</u></p> <p>5. <u>제4조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차별한 자</u></p>
---	--